#### 자퇴





• 동아대학교 학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안내합니다.

관련규정 바로가기 >



#### 정의

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

### 신청방법

- 1. 소속대학 행정실을 직접 방문하여 자퇴원을 작성해야 하며,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.
- 2. 행정실 방문시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여 방문한다.
  - 환불받을 수업료가 있는 경우 : 본인 도장, 부모님 도장, 부모님 명의 통장사본
  - 환불받을 수업료가 없는 경우 : 본인 도장, 부모님 도장(통장사본 불필요)

# 자퇴관련 서식





## 등록금 환불

- 1. 당해학기 개시일(신입생의 경우 입학일)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바화하다.
- 2.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, 수업료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

반환사유발생일	반환금액
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	수업료의 5/6 해당액

반환사유발생일	반환금액
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	수업료의 2/3 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	수업료의 1/2 해당액
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	반환하지 아니함

**!** 학기개시 경과일에 따른 해당일은 학사일정에서 조회할 수 있다.

학사일정 바로가기



학칙 제26조